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418호

「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「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1일

금융위원회

「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보상금,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등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법률 제19267호, '23.3.21 개정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보상금, 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(안 제26조, 제27조, 서식7)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(법률 제19267호, '23.9.22, 시행) 사항을 반

영하여 보상금,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’의 수입 회복 등에서 ‘공공기관’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

나.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(안 제26조제3항)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(법률 제19267호, '23.6.22, 시행)에 따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다.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범위 확대(안 서식8)

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외에 공익신고자등*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,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**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

*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(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제2조제5호)

**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(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제2조제3호)

3. 의견제출

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년 11월**

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감사담당관,
전화 : 02-2100-2792, 팩스 : 02-2100-2799, 이메일 : mych@korea.kr)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